

강원대학교 부설 원주평생교육원

2026년도 여름학기 개설강좌 신청 안내

1 개설 목적

- 대학의 우수한 인적,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, 지역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기여

2 신청 기간 및 방법

- 신청 기간: 2026. 5. 4.(월) ~ 5. 15.(금)까지 ※기한 엄수
- 수업 기간: 2026. 6. 29.(월) ~ 8. 23.(일)(최대 8주) ※강좌별 상이
- 신청 방법: 이메일 접수(yjlee75@kangwon.ac.kr)
- 신규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강좌 개설 신청 필수

3 모집 분야

- 평생교육 프로그램 6개 영역* 전 분야 및 개설 목적에 부합하고, 개설 최소 수강생 (10명 이상) 모집이 가능한 강좌

* 6개 영역: 기초문예, 학력보완, 직업능력, 문화예술, 인문 교양, 시민참여교육

※ 모집 분야 제한 사항

- 「의료법」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정(무면허 의료행위 등)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과정
- 「유아교육법」의 적용을 받는 유아 대상 과정
-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 외 장소에서 강의가 필요로 하는 과정
- 과도한 실습 장비 또는 전용공간이 필요한 과정
-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정
- 관내 타 평생학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개설 예정인 강좌

***동일 강사의 동일 강좌 신청 불가**

4 위촉일

- 2026년도 여름학기 개강일(2026. 6. 29.)부터 종강일(강좌별 상이)까지 위촉함

5 지원 자격(강원대학교 부설 원주평생교육원 운영지침 제12조)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
 -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
 -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
 - 관련 분야 자격증 및 자격 소유자로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
 - 관련 분야 유·무형의 문화재 전수자 또는 기능보유자
-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6 제출 서류

- 강좌개설 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
-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또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이력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)
- 자격증 사본(해당자)
- ※ 학력, 경력 등은 증빙서류로 제출된 사항으로만 인정함

7 문의

- (주소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150, 학생복지관(W11) 306-1호
- (전화) 033-760-8230
- (메일) yjlee75@kangwon.ac.kr

1.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. (yjlee75@kangwon.ac.kr)
※ 신규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 신청 필수 (홈페이지-열린마당-자료실-15번 글 참조)
2.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, 시설, 기자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3. 강사료는 「강원대학교 부설 원주평생교육원 운영지침」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.

강사료 지급 기준			
공통		예외	
수강 인원	강사료(원)/시간	항목	강사료
10명~15명	30,000	등록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	수입 금액의 80% 범위 내에서 지급
16명~20명	35,000		
21명~25명	40,000	특별 교육과정 위탁 교육과정	수입 금액의 70% 범위 내에서 지급
26명~30명	45,000		
31명~35명	50,000		
36명~40명	55,000		
41명 이상	60,000		

4. 강좌 특성상 실기 수업 위주의 수업은 강좌 수익의 지출 한도 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, 수강 인원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신청서 제출 시 보조강사 여부 작성
5. 수강료 외 기타 부대비용(교재비, 재료비, 답사비 등)은 수강생 별도 부담입니다.
 가. 기타 부대비용 금액 및 교재명 등을 정확히 기재
 나. 교재가 프린트물일 경우, 미리 제본하여 제작
6.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7. 접수된 강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개설이 확정되며, 개설 확정된 강의계획은 심의 후 보완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.
8. 일부 강좌는 교육의 성격 및 교육원의 사정 등에 따라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강원대학교 부설 원주평생교육원장